

##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4. 12. 15.  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 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### 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9월 8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9월 8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4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 12. 15) 상정 · 의결

### 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○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회계관직을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  
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기금운용관을 “생활복지국장”에서  
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변경 (안 제6조제2항제1호)

○기금출납원을 “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”에서 “기금출납담당  
주사”로 변경 (안 제6조제2항제2호)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### 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### 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### 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### 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